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115

제출년월일 : 202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1)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2) 탄력적 인력배치 및 운영과 시설관리의 통합으로 예산 절감

나. 민간위탁의 내용

1) 위탁운영 시설현황

구 분	망원나들목 체육관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위 치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 옆)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상부)
면 적	995.79㎡ (건물 연면적)			2,040㎡ (15m × 136m)
주요시설	1층	758.50㎡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사무실	테니스장(4코트), 조명탑(4개) 관리동(컨테이너 1동)
	2층	163.79㎡	헬스장, 샤워장, 탈의실	
	3층	73.50㎡	기계실	
위 치 도	별첨(붙임#1)			

2) 위탁기간

○ 망원나들목 체육관 : ′20. 11. 1. ~ ′22. 12. 31. (2년 2개월)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 ′20. 11. 1. ~ ′21. 12. 31. (1년 2개월)

※ 위탁기간 단기 사유

- 위탁기간은「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가능하나, 위 시설은 신규 시설로 단기 위탁을 통한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망원나들목 체육관은 위탁 시점(′20.11.1.)으로부터 3년 이내인 회계 연도말(′22.12.31.)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함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매년 위탁료를 징수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단기간 위탁을 통한 운영실적(수지율) 분석이 필요하기에, 위탁 시점(′20.11.1.)으로부터 ′21.12.31.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함

3) 위탁사무 범위 :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시설운영 :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설대관, 강사채용, 회원관리, 수강료 징수, 청소 등

○ 시설관리 :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4) 소요예산(세부내역 붙임#2 참조)

○ 망원나들목 체육관 : ′21년 400백만원

- 연간 운영수지 적자 예상되어 사용료, 대관료 등 구 세입으로 귀속처리 후, 수탁기관에 세출예산(민간이전) 편성·지출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 없음

- 연간 운영수지 흑자 예상되어 수탁기관으로부터 매년 위탁료 징수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시설별 공개모집

6)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15조 등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추진 일정

○ 2020. 9. : 민간위탁(수탁기관 선정)계획 방침 수립

○ 2020. 9. ~10.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10.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0. 11. 1. : 시설 개관(운영 예정)

※ 추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2.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2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사항 :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붙임#2 참조)

붙임 1.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위치도 1부.
2.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1부. 끝.

〔붙임 1〕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위치도

〔붙임 2〕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 운영개요

구 분	망원나들목 체육관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위 치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 옆)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상부)
면 적	995.79㎡ (건물 연면적)	2,040㎡ (15m × 136m)
주요시설	종합체육관(배드민턴 4면) 헬스장(12명내 사용)	테니스코트 4면, 조명탑 4개
운영인력	7명 〔행정 2, 현업 5(안내 3, 미화 2)〕	2명 〔현업 2〕
소요예산	**'21년 400백만원**	-
세입·세출 예산 방법	- 세입 : 수입금 구 세입 처리 - 세출 : 민간이전 편성·지출	매년 위탁료 징수

□ '21년 운영수지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A)	세출(B)	수익(A-B)	수지율 (A/B×100)
체 육 관	193,083	400,460	△207,377	48.21%
테니스장	105,235	94,500	10,735	111.36%

□ 세입·세출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A)	세출(B)			수익(A-B)
		계	인건비	운영비 (강사보상포함)	
체 육 관	193,083	400,460	274,608	125,852	△207,377
테니스장	105,235	94,500	64,450	30,050	10,735

□ 세입예산(추계) : A

○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망원나들목 체육관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계	**193,083**	**105,235**
수강료(프로그램)	68,760	50,803
시설사용료	119,577	54,432
시설대관료	2,496	-
사물함	2,250	-

※ 세부내역 : 시설별 비용 추계(안) 참조

□ 세출예산(추계) : B

○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망원나들목 체육관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계		**400,460**	**94,500**
인건비	기본급,수당	233,468	53,701
	연금부담금 등	41,140	10,749
운영비	기본경비	3,100	200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3,600	5,356
	환경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7,064	-
	강사보상금	32,088	24,494

※ 세부내역 : 시설별 비용 추계(안) 참조

망원나들목 체육관 비용 추계(안)-1년

(단위 : 원)

예산항목(구분)	상세내역	소요예산
수지(A-B)		**△207,376,743**
세입(A)	수강료, 시설 사용료	**193,083,600**
세출(B)	인력운영비, 운영비	**400,460,343**

세입예산(A)				**193,083,600**
수강료				**68,760,000**
유아체육-월8회	35,000원(월) × 25인 × 4반 × 12개월 × 75%			31,500,000
그룹PT-월8회	69,000원(월) × 15인 × 4반 × 12개월 × 75%			37,260,000
시설 사용료(이용료)				**124,323,600**
월사용료	{(28,500원 × 32인) + (40,000원 × 100인)} × 12개월 × 75%			44,208,000
일일사용료	[{(2,500원 × 800인) + (3,000원 × 384인)} × 12개월 × 75%] + [{(3,500원 × 1,280인) + (4,000원 × 512인)} × 12개월 × 60%]			75,369,600
시설대관료	32,500원/1시간 × 4일 × 2타임 × 12개월 × 75%			2,496,000
사물함	5,000원 × 50인 × 12개월 × 75%			2,250,000

세출예산(B)				**400,460,343**
인력운영비				**274,608,343**
인건비 - 기본급	행정직(8급 7호봉)	2,201,000원 × 12개월 × 1인 = 26,412,000원		156,007,000
	행정직(9급 4호봉)	1,749,580원 × 12개월 × 1인 = 20,995,000원		
	현업직(안내)	1,850,000원 × 12개월 × 3인 = 66,600,000원		
	현업직(미화)	1,750,000원 × 12개월 × 2인 = 42,000,000원		
인건비 - 수당	교통보조비	{(100,000원 × 2인) + (50,000원 × 5인)} × 12개월		77,461,300
	정액급식비	{(130,000원 × 2인) + (80,000원 × 5인)} × 12개월		
	연장근무수당	행정직 : (통상임금) × 1.5/209 × 30시간 × 2인 현업직 : (통상임금) × 1.5/209 × 20시간 × 5인		
	명절휴가비	(기본급) × 50% × 2회		
	연장근무자 급량비	70,000원 × 12개월 × 2인		
	연차보상비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 × 5일 × 7인		
	직급보조비	105,000원 × 12개월 × 2인		
	국내여비	{(60,000원 × 2인) + (40,000원 × 5인)} × 2회		
	생활임금보전수당	{(219,307원 × 3인) + (319,307원 × 2인)} × 12개월		
	성과상여금	행정직 : (기본급) × 80% × 2인 현업직 : (기본급) × 50% × 5인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319,948원 × 1인) + (263,125원 × 1인) + (232,105원 × 3인) + (220,383원 × 2인)} × 12개월		41,140,043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운영비				**125,852,000**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3,100,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접수신청서 등 제작, 체육관 소모품 구입 등		13,600,000
	자산취득비	체육관 시설물 보완비용(가림막 설치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환경정비 소모품, CCTV용역, 기타 전산사용료, 자문수수료, 안전관리비, 서버운영비, 사무용품, 복합기 소모품 구매 등		77,064,000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상비	일반보상비	프로그램 강사보상비		32,088,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비용 추계(안)-1년

(단위 : 원)

예산항목(구분)	상세내역	소요예산
수지(A-B)		**10,734,730**
세입(A)	수강료, 시설 사용료	**105,235,200**
세출(B)	인력운영비, 운영비	**94,500,470**

세입예산(A)				**105,235,200**
수강료				**54,432,000**
레슨비-주3회	150,000원(월) × 10인 × 3반 × 12개월 × 70%(이용률) × 80%(가용률)			30,240,000
레슨비-주2회	120,000원(월) × 10인 × 3반 × 12개월 × 70%(이용률) × 80%(가용률)			24,192,000
시설 사용료(이용료)				**50,803,200**
일일사용료	3,384,000원(코트3면 월수입 합계) × 12개월 × 80%(가용률)			32,486,400
전용사용료	1,908,000원(코트1면 월수입 합계) × 12개월 × 80%(가용률)			18,316,800

세출예산(B)				**94,500,470**
인력운영비				**64,450,070**
인건비 - 기본급	현업직		1,850,000원 × 2인 × 12개월	44,400,000
인건비 - 수당	교통보조비		50,000원 × 2인 × 12개월	9,301,250
	정액급식비		80,000원 × 2인 × 12개월	
	연차보상비		1,980,000원/209시간 × 8시간 × 5일 × 2인	
	국내여비		40,000원 × 2인 × 2회	
	생활임금보전수당		219,307원 × 2인 × 12개월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214,328원 × 2인 × 12개월	10,748,820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운영비				**30,050,400**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200,000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접수신청서 등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5,356,000
	공공운영비	각종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상비	일반보상비	프로그램 강사보상비		24,494,400